# 인천 주안역 센트레븰 보류지 입주자모집공고문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청약홈 모바일앱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행은행 창구







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사업=	두체명	시공화	희사명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힙	(법인등록번호 : 120171-0004775)	동부건설 주식회사 (법인등	록번호 : 110111-0005002)
구분	건축·토목·기계	소방·통신	전기
회사명	㈜동우이앤씨	㈜한국전설엔지니어링	㈜지여이앤씨
감리금액	3,309,130,000	744,518,500	627,000,000

■ 분양안내: 02-779-6114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비 공	급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1.09.23(목)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	2021.09.24(금)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021.09.27(월) 08:00~17:30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체결 일정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ul> <li>일시: 2021.10.01.(금)</li> <li>확인방법         <ul> <li>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 일시 - 2021.10.12.(화)~2021.10.14.(목) / 10:00~16:00 • 장소 - 주안역 센트레빌 입주지원센터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9-2)

## 공급 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675호(2021.9.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19-2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29층 12개동 총 1,458세대 중 조한원, 소형임대, 일반공급을 제외한 보류지 8세대

2순위

■ 공급대	 	, , , , , , , , , , , , , , , , , , ,	J = 6 L, = 0	
			-1.1	주택공급면적(m²)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1101	- II - II red		공급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01	047.9816A	47A	47.9816	24.4477	72.4293	26.6670	99.0963	24.6543	1	1	-
		02	047 <u>.</u> 9558B	47B	47.9558	23.9734	71.9292	26.6526	98.5818	24.4841	1	1	-
		03	059.9698A	59A	59.9698	26.9577	86.9275	33.3297	120.2572	29.5894	1	1	-
	2021-000687	04	059.9712C	59C	59.9712	22.1954	82.1666	33.3304	115.4970	27.9688	1	1	-
민영 주택	2021-000007	05	059.9824D	59D	59.9824	22.0274	82.0098	33.3367	115.3465	27.9155	1	1	-
		06	074.9245A	74A	74.9245	25.2034	100.1279	41.6412	141.7691	34.0827	1	1	-
		07	074.9691B	74B	74.9691	24.2613	99.2304	41.6659	140.8963	33.7772	1	1	-
		08	084.8145B	84B	84.8145	25.0733	109.8878	47.1302	157.0180	37.4049	1	1	-
						합계					8	8	-

- ※ 상기 면적은 준공인가(2021.07.27.)기준으로 향후 소유권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등의 행정절차 진행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안역 센트레빌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1. 07. 27.) 된 주택으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관람은 제한될 수 있으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동·호수에 대한 평면 및 단지 정보는 홈페이지(<u>https://www.centreville.co.kr/</u>) - 고객서비스 -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대 관람은 한국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후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모든 동 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가외 발코니 확장 계약(유상)을 함께 진행하고 발코니 확장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내용을 충분히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잔금납부일(계약일 이후 60일내 / 2021.12 예정)

IV	공급 금액 및 분	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가격		계약금 (10%)	잔금 (90%)
타입	주택형	세대수	동	호	대지비	건축비	총 분양가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내)
47A	047.9816A	1	106	207	99,240,000	258,260,000	357,500,000	35,750,000	321,750,000
47B	047.9558B	1	106	503	97,720,000	254,280,000	352,000,000	35,200,000	316,800,000
59A	059.9698A	1	105	502	122,150,000	317,850,000	440,000,000	44,000,000	396,000,000
59C	059.9712C	1	102	502	119,090,000	309,910,000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59D	059.9824D	1	104	504	119,090,000	309,910,000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74A	074.9245A	1	110	504	145,050,000	377,450,000	522,500,000	52,250,000	470,250,000
74B	074.9691B	1	110	503	148,100,000	385,400,000	533,500,000	53,350,000	480,150,000
84B	084.8145B	1	109	501	167,950,000	437,050,000	605,000,000	60,500,000	544,500,000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자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삿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제외 금액임.
-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 추가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m) X 0.3025 또는 공급면적(m) ÷3.3058)

# ■ 부양대급 난부계잔 및 난부방법

	1108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1225-2115	동부건설(주) /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사업주체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향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상기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계좌가 적용될 수 있음. (적용 시 추후
- 공지예정) • 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자격요건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신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유의사항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BT/1//	그 내고 시	744.0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이하	※ 가점제(7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 추첨제(2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고주택(토지업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약에금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자축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자축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가능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7.27.)된 아파트로써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공급되는 모든 동 호수에 발코니 확장 시공되어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금액 외 별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유상]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발코니	계약금	잔금
타입	주택형	세대수	동	호	할고니 확장금액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내)
47A	47.9816A	1	106	207	10,500,000	1,000,000	9,500,000
47B	47.9558B	1	106	503	7,120,000	700,000	6,420,000
59A	59.9698A	1	105	502	12,120,000	1,200,000	10,920,000
59C	59.9712C	1	102	502	12,750,000	1,200,000	11,550,000
59D	59.9824D	1	104	504	12,770,000	1,200,000	11,570,000
74A	74.9245A	1	110	504	13,370,000	1,300,000	12,070,000
74B	74.9691B	1	110	503	13,650,000	1,300,000	12,350,000
84B	84.8145B	1	109	501	14,990,000	1,500,000	13,490,000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전체 주택형의 외부 창호(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전동빨래건조대, 세탁실 선반, 자녀방 붙박이장(1개), 전기오븐(행주도마살균 일체형), 하이브리드쿡탑(가스1구+하이라이트2구),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Push-Pul 콘센트, 욕실 비데 1개소 등이 포함됨

2. 발코니 확장 납부 계	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수협은행	101	0-1225-2010	동부건설(주)
계약금	· (계약서 참고)			잔금 (계약서 참고)
	계약시		입주	지정일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단위: m'/세대)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일정은 계약자
-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 = "B= 5 으로=="" | 1 = - - | 1 =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1 =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입주예정일: 잔금납부일(계약일 이후 60일내 / 2021.12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소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36, 37, 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동법시행령

# 3. 공동주택성능 등급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친환경 성능 평가서

녹색건축 인	민증서		건축물	에너지효	율등급 인	증서
그 후 보고 기가 있다면 보다 있다. 그 후 보고 기가 있다면 보다 있다. 그 후 보고 기가 있다면 보다 있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00 TE 100-000	1 mar   1 ma	000 000 000 000 1000 000			
(978-970 (1704-970		=				
24 25 25 25 56 27 27 5	The party of the p	74	Section Section 10	STATE OF THE PARTY		United States
24 0.0 25 t 50 0.00	200 2000 120G	79 69 69 60 28 23 23 23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MARKET   MAR	DILLEGE  OPPRY  MINISTER MENT OF  OLI  OLI  OLI  OLI  OLI  OLI  OLI  O	10 months (10 months)	1967% 05.45% feyr of 64 13. 13 17 14.

#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부위의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2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변압기, 펌프, 전동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를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장치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